

인권노동방침

진영 인권노동방침

인권노동 방침

진영의 모든 임직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, 근로 제공과 관련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

진영은 UN, ILO 등 노동관계 국제 기구의 인권 및 노동기준을 준수하며,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 보장을 기본가치로 실천한다.

진영은 사회/경제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적정 임금을 보장하며, 일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
진영은 RBA (Responsible Business Alliance) 행동규범을 준수하며, 본 방침은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임을 확인한다.

진영은 본 방침과 관련하여 모든 근로자와 의사소통한다.

진영은 다음과 같이 글로벌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권 및 노동관련 전 프로세스를 관리/운영한다.

운영지침

제 1조 인간존중

모든 임직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,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비인격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. 성희롱, 성적 학대, 체벌, 욕설 등 비인격적 행위가 확인되면, 상벌규정에

따라 엄중히 조치한다.

제 2조 강제근로 금지

폭행, 협박, 감금, 인신매매, 노예 노동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임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. 채용 시 임직원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1부를 임직원에게 제공한다. 고용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, 여권 또는 근로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. 또한 임직원에게 채용과 관련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.

제 3조 아동고용 금지

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한다.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안전보건상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며, 야간 근로와 초과 근로도 이에 해당한다. 실습생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제공하고,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.

제 4조 차별금지

임직원의 성별, 인종, 피부색, 나이, 성적 지향, 성(性)정체성, 출신 민족/국가, 장애여부, 임신여부, 결혼여부, 종교, 정치 성향, 노조 활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채용, 임금, 승진 등 인사 프로세스 상에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. 필요한 경우, 종교적 관습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.

제 5조 근로시간

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정규,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. 나아가 RBA 권고 기준에 따라 비상 사태 또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, 매 7일마다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보장한다.

제 6조 임금 및 복리후생

모든 임직원에게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하고, 모든 초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,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에 적용하는 시간당 급여보다 높은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. 징계 조치로서의 감급(감봉)은 허용되지 않는다. 이를 통해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의 실적 향상을 꾀하며, 건전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.

제 7조 결사의 자유

건전한 조직 발전을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부여한다. 또한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따라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를 위해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하며,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.

제 8조 법규준수

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상 근로조건 기준을 준수하며, 그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부여하지 않는다.
